

영등포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3.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94호로 2020년 3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부채납지(신길동 339-30번지 일대)에 영구시설물(공립단설유치원,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토지개요

-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339-30번지 일대(신길5동)
- 대지면적: 1,250 $m^2$  (※ 기부채납지 총 대지면적: 2,890 $m^2$ )
- 소 유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 공시지가: 4,500백만원

(※ 해당지역 2019년 단위면적( $m^2$ )당 개별공시지가 3,600천원)

## 나. 건축개요

-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339-30번지 일대(신길5동)
-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4층(건축면적 750 $m^2$ , 연면적 3,200 $m^2$ )
- 용 도: 공립 단설 유치원
- 시설내역(안): 교실, 놀이시설, 강당, 조리실 및 식당 등

구 분	면적( $m^2$ )	용 도 (안)
연면적	3,200	
4층	150	조리실 및 식당
3층	750	유치원 교실, 놀이시설, 강당
2층	750	유치원 교실, 기타실
1층	750	유치원 관리실, 공동활용공간
지1층	800	기계실, 주차장

- 시 설 비: 8,500백만원(서울시교육청)

## 다. 동의내용 및 대상

- 동의내용: 공유재산(구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 동의대상: 건축물(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200 $m^2$ )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구유지상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 (가칭)신길유치원 축조 현황

위치	대지 면적	소유자		규모	시설비
		토지	건물		
영등포구 신길5동 339-30번지	1,250m <sup>2</sup>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교육감	지하1층 ~지상4층	8,500백만원 (서울시 교육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타 지자체는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지자체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동법 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양 자치단체장간에 합의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법률상·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한 공립단설유치원의 축조는 우리 구 교육행정의 공익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유치원 취학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10. (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 8.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가는 제외) 공유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지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 공용건축물(청사, 관사, 예술회관, 시·도립학교·박물관·도서관 등)이 아닌 공공용 시설물(도로, 제방, 하천, 공원, 구거, 우수지, 전용노외주차장, 주차빌딩 등) 등의 영구시설물은 해당되지 않음